

'19.10.11.(金) 조간부터
보도가능

별첨

주요 현안과제

2019. 10. 10.

금융위원회

||| 목 차 |||

I. [혁신]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	1
II. [포용]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	2
III. [혁신]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	3
IV. [혁신] 모험자본 활성화	5
V. [혁신] 면책제도 개편 추진	6
VI. [포용] 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	7
VII. [안정]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	8

I. [혁신]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

□ 추진 경과

○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('18.12.24일)

○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, 외평위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모두 예비인가 불허*

* (키움뱅크)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

* (토스뱅크)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과 지배주주 적합성 측면에서 미흡

○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 재추진 결정('19.5.26일)

-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(2개사 이하), 심사 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

-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컨설팅 제공, 금융위원회·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

○ 재추진 방안 발표이후 2개월간 신규인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시행하였고,

- '19.9.23.부터 종합컨설팅 신청을 접수받아, ICT기업 등을 대상으로 '19.9.30일부터 종합컨설팅 실시 중

□ 향후 계획

○ 컨설팅 희망기업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계속 진행(~10.4일)하고, '19.10.10~15일 중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 결정

○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만큼, 관심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사항을 안내하고, 금감원과 협조하여 인가절차 진행

II. [포용]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

□ 추진 경과

- ① (검사) 8.23일부터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쏘 과정을 집중 점검
→ 중간 검사결과, 설계·운용·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, 내부통제 미흡,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 발견
- ② (분쟁조정) 9.29일까지 총 193건(은행 190건, 증권사 3건) 접수
- ③ (제도개선) 연구기관·학계·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 검토중

□ 향후 계획

- ①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재발방지
- ②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
- ③ 설계·운용·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(11월)

※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적극 지원
(‘19년중 통과 목표)

Ⅲ. [혁신]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

1.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

□ 추진 경과

-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 추진
 - 「금융혁신법」 제정(19.4월 시행)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, 혁신금융서비스 53건 지정
 - 오픈뱅킹 추진 및 MyData, P2P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 및 관련법(P2P금융법, 신용정보법 등) 제·개정 노력 지속

□ 향후 계획

-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한 핀테크 정책 추진을 위해 10월 중 '핀테크 스케일업 전략' 마련 예정
 -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, 규제개혁, 투자확대, 해외진출 지원 집중추진

※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주요내용

- ① (금융규제 샌드박스) '20.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- ② (규제개혁)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ⁱ⁾맞춤형 규제혁신, 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한 ⁱⁱ⁾동태적 규제개선,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ⁱⁱⁱ⁾현장밀착형 규제정비
 - * i)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, 연구원, 업계로 구성된 T/F 구성·운영 → '20.上 결과 발표
 - ii) 테스트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규제개선
 - iii) 핀테크 랩, 핀테크 업체 등을 방문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·정비
- ③ (투자확대) 3,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, 핀테크 분야 정책자금 공급 확대, 산은 넥스트라운드·디캠프 데모데이 등에 핀테크 IR 정례화
- ④ (해외진출) 금융회사와 연계한 해외진출, 해외IR, 금융분야 디지털 국제협력

- '핀테크 스케일업 전략' 시행과 병행하여 주기적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핀테크 활성화 지원과제 발굴·보완

2. 빅데이터 활성화

□ 추진 경과

- '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'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방안을 균형있게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

※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

- ▶ (정부 공통과제) 가명정보의 빅데이터 분석·이용, 데이터 결합 등의 법적 근거 마련
- ▶ (금융분야 과제)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정보보호 내실화
- 마이데이터(MyData), 비금융 신용조회회사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산업 플레이어 출현 기반 마련
- 정보활용동의서를 알기쉽게 개선(Informed Consent), 데이터 이동권,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

- 동 방안을 담은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 발의(김병욱 의원안, '18.11월)
- 핀테크·일반 기업 등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'빅데이터 개방시스템'을 신용정보원에 구축('19.6월~)

□ 향후 계획

- 국회 논의중인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
- 금융분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구축
 - (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고도화) 이미 가동중인 일반신용DB에 이어 보험신용DB, 맞춤형DB 제공 등 기능 확대(~'20년 상반기)

IV. [혁신]모험자본 활성화

□ 추진 경과

- 코스닥시장이 모험자본을 공급·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「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*」 마련('18.1.)
 - * ①기관투자자 등 세제·금융지원 확대 ②상장요건 완화(테슬라요건 확대 등) 등
-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발표('18.11.) → 12개 중 8개 과제* 세부방안 마련
 - * ①중기전문 증권사 도입 ②개인전문투자자 확대 ③코넥스시장 활성화 ④BDC 제도 도입 ⑤사모·소액공모 활성화 ⑥사모펀드 활성화 ⑦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⑧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재정비
- 성장지원펀드를 출범(산은, '18.3월)하여 현재까지 2.9조원 조성

□ 향후 계획

- 중소기업 투자제약요인 해소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
 -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모험자본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고려
 - * (예)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·확대되는 사모·소액공모제도 이용 금지

※ '19.4분기 중 추진 예정인 모험자본 활성화 주요 과제

- ① (중소기업 투자제약요인 해소) 증권회사의 중소·벤처기업 투자에 제약이 되는 NCR,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관련 규제를 정비
- ② (IPO 및 인수제도 개선) IPO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·책임성을 강화하여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
 - * i) IPO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, 최초가격 산정시 주관사의 자율성 부여
 - ii) 공모주 배정시 증권사 자율배분 물량 확대 및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
- ③ (자산유동화제도 개편) 중소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,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
 - * i) 기업 신용도 제한 등 과도한 규제 폐지
 - ii)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'비등록 유동화'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

- '19년말까지 총 2.4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

V. [혁신]면책제도 개편 추진

□ 추진배경

- 우리 금융은 ①혁신부문으로의 자금흐름 활성화 및 ②핀테크 등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위한 “새로운 시도”를 적극 추진중
-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·임직원이 “적극적·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,
 - 금융회사·임직원의 “실패한 시도”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
- 이를 위해 「금융감독 혁신방안」(19.8월)에서 면책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취임사에서도 재차 강조

□ 향후 계획

- 금감원 등과 함께 ‘여신에 대한 면책’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

※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주요 과제(안)

- (i) (면책범위)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, 혁신금융 등 주요 금융정책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

* (예시) 동산·일괄담보대출, 기술력·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혁신 금융서비스·지정대리인, 모험자본 투자 등을 포함

- (ii) (면책신청제도·면책위원회) 금융회사·임직원의 신청에 의해 면책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면책신청 제도 도입

- 또한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면책심사의 객관성을 제고

- (iii) (면책추정)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

VI. [포용]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

□ 추진 경과

- (자금지원)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*
 - *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(연간, 조원): ('16) 5.0 ('17) 6.9 ('18) 7.2 ('19.上) 3.8
 -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신용층 지원을 위해 '햇살론17' 출시('19.9월)
- (채무조정) 제도정비와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,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감면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 지원*
 - * 신복위 (프리)워크아웃 확정자(연간, 만명): ('16) 8.1 ('17) 8.9 ('18) 9.3 ('19.上) 4.9
 - 연체 우려자부터 상환불능단계 채무자까지 사각지대 없이 연체 쏠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완비*
 - * ①상각채권 감면을 상향('19.4월), ②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('19.7월), ③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('19.9월), ④미상각채무 원금감면('19.9월)
- (금융편의)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*이 정무위 계류중이며, 복지부·의료계·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제도 운영중
 - * 고용진('18.9월), 전재수('19.1월) 의원 보험업법 발의 : 소비자(환자) 요구시 모든 의료기관에 보험회사로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 부여

□ 향후 계획

- (자금지원) 안정적 재원확보를 토대로 정책서민금융 기능 강화
 - 햇살론17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(9.2~30일 19영업일간 993억원)함에 따라 공급규모 확대('19년 공급목표 2,000억원 → 최대 4,000억원)
 - 미취업 청년·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(잠정)의 "햇살론^{youth}"(가칭) 출시
 - * '20년도 정부 예산안에 "햇살론^{youth}" 관련 예산 150억원 반영
- (채무조정)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('19.4분기~'20년下)
- (금융편의)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되,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보험업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*도 적극 모색
 - * (예) 모든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실손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, 추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

Ⅶ. [안정]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

1.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지원

□ 추진 경과

- 日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국내 수입업체 등의 ①경영애로 해소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②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발표(8.3일)

※ 금융지원 방안 주요 내용('19.8.3일 발표)

①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및 신규 유동성 공급 최대 6조원

② 시설자금 등 신규 유동성 공급, M&A 인수금융 등 20.5조원 이상* 지원

*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(산·기은, 10조원), M&A 관련 지원(수·기은, 2.5조원) 등

- 유관기관 합동 「금융부문 비상대응 TF*」를 운영하면서 수출규제 관련기업 모니터링 및 필요자금 적시공급 지원

* 금감원, 정책금융기관, 시중은행(은행연) 등으로 3개 반 구성, 「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(산업부, 무역·세제·고용 등 지원)」와 긴밀 연계

- 8.5~10.2일(9주간) 총 640건, 1조 1,891억원 지원

□ 향후 계획

- 수출규제 연관기업에 대한 만기연장, 유동성 지원 등 지속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 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기술·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(20.5조원)을 신속히 집행
 - 「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체(9.10일 발족)」를 통한 인수금융 지원(2.5조원) 등 국내기업의 신속한 기술 확보 유도
 - 재정·정책·민간자금 등을 활용하여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대규모 전용 펀드 조성

* 2,000억원 재정 출자를 '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

2.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보완방안 추진

□ 추진 경과

-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」 발표(국토부·기재부·금융위, '19.10.1일)

※ 「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」의 금융부문 주요 내용

○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

- ①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LTV 40% 도입
- ②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·매매업 법인에 LTV 40% 도입
- ③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40%/60% 도입

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

차주 유형	업종	규제지역			비규제 지역
	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
가계대출	-	40%	40%	60%	70%
기업대출	개인사업자 대출	주택임대업	40%	40%	-
		주택매매업	규제없음 → LTV 40% 도입(①)		
	법인대출	주택임대업	규제없음 → LTV 40% 도입(②)		-
		주택매매업			

* 신규 LTV규제대상에 대한 쏠금융권 주담대 잔액('19.6월말 기준) : ①0.74조원 ②0.59조원

○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

* 고가주택(시가 9억원 초과)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

□ 향후 계획

-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는 10.14일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하고, 11월초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 완료
-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조치는 10월말까지 주택금융공사, HUG의 내규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
-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('19.10~12월)을 통해 자금 출처 의심 거래사례 등에 대한 금융규제 이행여부 점검